

## 제40호

### 행정 명령

#### 장애를 가진 뉴욕 주민의 종합적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취업 우선 주가 되기 위한 뉴욕의 노력

뉴욕주가 취업 장벽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있으며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 안정성이 복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임을 인지하고 또한 개인의 취업이 독립성과 경제적 자기 충족을 포함한 가시적 및 비가시적 결과를 비롯해 존엄과 자신감, 성취감, 자부심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가 직업 계획, 훈련, 직업 탐색, 인턴십, 지역사회 경험, 소프트 스킬 개발, 직업 특화 교육, 일반 사무 대비 활동 등 중간 단계의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취업 결과를 얻고 개인의 선택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는 장애를 가진 근로 가능 연령의 개인이 지원 여부에 관계 없이 종합적인 취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뉴욕주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는 충분한 정보를 인지한 상황에서의 선택과 당사자가 계획 및 대비, 취업 기회 탐색에서 충분히 참여하는 개인 중심 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는 장애를 가진 청년이 교육, 취업, 취업 전 전환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들이 직업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기술과 재능을 인정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뉴욕주가 장애를 가진 근로 가능 연령의 뉴욕 주민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계획해 제공할 때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종합적 취업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전국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본 명령에 명시한 취업 제일 원칙(Employment First Principles)을 채택하고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 A. 정의

1. “주정부 기관”은 공무원법(Public Officers Law) 74조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장애"는 행정법(Executive Law) 292(21)조와 같은 의미입니다.
3. “종합”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 a.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 여부에 관계 없이 사람과 소통하는 커뮤니티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환경.

b. 취업 결과와 관련하여 신청자 또는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닌 신청자 또는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장애가 없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 소통하는 커뮤니티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환경.

4. "종합 취업 경쟁력"은 다음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a. 종합 환경에서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에 대한 경쟁적 노동 시장내의 일자리.

b. 개인이 최저임금 이상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에서 근무했을 때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과 복지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보상을 받는 일자리.

## B. 책임

1. 주지사 직속 장애 사무국(Governor's Chief Disability Office, CDO)은 뉴욕의 취업 제일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2. CDO과의 협력을 위해 주정부 기관은 일상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취업 제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장애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기 결정권을 누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유의미한 일자리와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하며 미국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의 주류에 통합될 수 있는 인권 행사를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자족을 개선하고 목적 의식을 갖게 하며, 독립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장 중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들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개별 서비스를 통해 일반 사무에서 종합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추어 장애를 가지지 않은 동료의 옆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종합 취업 경쟁력은 장애를 가진 모든 근로 가능 연령 뉴욕 주민을 위해 의도된 결과입니다.
-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들은 성인으로서 종합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Education Act)에 명시된 졸업 전 취업 전 서비스와 전환 계획을 포함합니다.
- 개인 중심 계획과 개별 의견 반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프로그램 설계, 시행, 서비스 시행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 및 시스템 지원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인력 구성은 해당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성, 평등, 포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주고자 하는 뉴욕 기업의 참여가 포함됩니다.
- 정보에 기초한 선택, 개인정보와 기밀 정보에 대한 존중, 지원 기술 활용, 종합 취업 경쟁력에 대한 증거 기반 접근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공공 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주정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 독립성, 금융 문해력, 수당 계획, 홍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C. 보고

1. CDO는 발달 장애인 지원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for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아동가정복지청(Office for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임시 및 장애 지원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 등과 협력하여 2025년 10월 1일까지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장애물을 없애는 한편, 종합 취업 경쟁력이 서비스 계획과 제공의 첫 번째이자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절차 또는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획에는 주정부 기관이 개인 중심 계획 절차를 마련해 기관이 지원하는 모든 근로 가능 연령 해당자의 원하는 취업 결과 또는 종합 취업 경쟁력 확보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DO는 주정부 기관이 현재 절차를 평가할 수 있는 형식을 마련할 것입니다.

2. CDO는 본 조항에 명시된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종합 취업 경쟁력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를 계속 거둘 수 있도록 매년 권고를 검토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매년 10월 1일까지 취업 제일 원칙 시행과 관련해 연간 성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CDO에 보고해야 합니다.

#### **D. 훈련**

CDO는 취업 제일 원칙 훈련 커리큘럼을 마련합니다. 훈련에는 주정부 기관이 자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취업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을 위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E. 협의**

CDO는 주정부 기관장 또는 뉴욕주 교육부 커미셔너와 협의하여 본 행정명령의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행정명령은 2024년 9월 1일 행정명령 136호를 취소하고 대체합니다. 단,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각 주정부 기관이 본 행정명령의 취업 제일 원칙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행정명령 136호에 따라 제정한 모든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천이십사년 구월

삼십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